

농산을 새롭게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	제49호
------	------

<p>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

제 출 자	행정복지국장
제출연월일	2023. 4. 11.

예산실장 심사필

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9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4. 11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제안설명자 : 100세행복교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는 장사문화에 걸맞춰 대응함으로써
- 나. 논산시 양지추모원 내 부부를 함께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유골의 봉안대상 중 부부단 이용 신규 조항 추가 (제3조제4항)
 -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봉안대상이 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단으로 안치할 수 있다.
- 추모원 사용요금 추가 (제7조제1항, 별표1)
 - 부부단 사용요금 : 300,000원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참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타사항
 - (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감사실-2330(2023.3.6.)호]
 - (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복지정책과-6579(2023.2.24.)호]
 - (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 [예산실-2306(2023.2.23.)호]

(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
가. 예고기간 : 2023. 2. 22. ~ 3. 14.(20일간)

나.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(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(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경로보훈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봉안 대상이 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단으로 안치할 수 있다.

1. 개장한 부부의 유골을 동시에 안치하는 경우
2. 부부 중 1명 또는 모두가 양지추모원 개인단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부를 동시에 안치하는 경우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100세 행복과장	한 창 건
	어르신시설팀장	조 영 국
	담당자	이 정 진 (746-5803)

[별표 1]

사용요금(유연고)(제7조제1항 관련)

기 준 (봉안기준)	사 용 요 금(단위 : 원)			비 고
	계	봉안요금	관리수수료	
개인단 (10년)	200,000	150,000	50,000	
부부단 (10년)	300,000	225,000	75,000	

※ 개인봉안단 안치자가 부부봉안단으로 합장을 원할 경우 부부봉안당 안치 시점 으로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 신규 납부 적용하되, 개인봉안단 사용료 반환은 [별표2]의 기준대로 반환한다.

□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유골의 봉안대상) ① ~ 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유골의 봉안대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봉안 대상이 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단으로 안치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개장한 부부의 유골을 동시에 안치하는 경우</u> 2. <u>부부 중 1명 또는 모두가 양친추모원 개인단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부를 동시에 안치하는 경우</u> 3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[별표 1] 사용요금(유연고)(제7조제1항 관련)					[별표 1] 사용요금(유연고)(제7조제1항 관련)				
기 준 (봉안 기준)	사 용 요 금(단위 : 원)			비 고	기 준 (봉안 기준)	사 용 요 금(단위 : 원)			비 고
	계	봉안 요금	관리 수수료			계	봉안 요금	관리 수수료	
개인단 (10년)	200,000	150,000	50,000		개인단 (10년)	200,000	150,000	50,000	
<신설>	<신설>	<신설>	<신설>		부부단 (10년)	300,000	225,000	75,000	
< 신 설 >					※ 개인봉안단 안치자가 부부봉안단으로 합장을 원할 경우 부부봉안당 안치 시점 으로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 신규 납부 적용하되, 개인봉안단 사용료 반환은 [별표2]의 기준대로 반환한다.				

1.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

- 제3조(유골의 봉안대상)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봉안 대상이 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단으로 안치할 수 있다.

2. 비용 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논산시 양지추모원 부부단 설치 홍보 및 봉안당 관리 등

나. 추계 결과

- 2023년도

구 분	산 출 기 초	금액(천원)
부부단 홍보 및 봉안당 관리 등	1식 × 1,000천원	1,000

※ 재원조달방안 : 시비

3. 작성자

100세 행복과장 한 창 건

〈연도별 비용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입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시 비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세 출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201-01 사무관리비						
◎ 부부단 홍보 및 관리 등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재원 조달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	지방세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기 타 (채무부담 민자 등)						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공설묘지 등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설묘지·공설화장시설·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·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·공설화장시설·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·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. 28.>

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·관리할 수 있다.

④ 산림청장,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, 위치, 지번,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·공설화장시설·공설봉안시설·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·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·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5.>

12. 29., 2017. 12. 19.)>

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·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·분묘, 화장,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·절차 등에 따라 기록·보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29.>

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·공설화장시설·공설봉안 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립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2. 29.>